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(소방위 1명, 소방장 1명, 소방교 2명, 소방사 2명, 전문경력관 가군 4명, 전문경력관 나군 5명)을 증원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소방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16. ~ 8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524”를 “539”로 하고, 소방공무원 계 “443”을 “449”로 하며, 소방준감 이하 “441”을 “44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81”을 “90”으로 하며, 전문경력관 “74”를 “8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<u>7퍼센트</u>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	제22조(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, ----- ----- <u>10퍼센트</u> ----- -----,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<u>7퍼센트</u>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	제23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-, ----- ----- <u>10퍼센트</u> ----- ----- -----,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소방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524</u>	<u>539</u>	+15
소방공무원 계	<u>443</u>	<u>449</u>	+6
·	·	·	
소방준감 이하	<u>441</u>	<u>447</u>	+6
일반직 계	<u>81</u>	<u>90</u>	+9
·	·	·	
전문경력관	<u>74</u>	<u>83</u>	+9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2